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3

발의연월일 : 2005년 6월30일
발 의 자 : 장준호의원외 7인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에서 위임됨에 따라 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충청북도지사)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장 등으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함(안 제6조)

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함(안 제8조)

바.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하는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제척규정을 둠 (안 제11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붙임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①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제척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의3(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구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